고용노동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3. 2. 10.(금)
담당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 강검윤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 이영지 (044-202-8953) 주무관 권중화 (044-202-8960)
	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	책임자	과 장 장현태 (031-259-0315)
		담당자	팀 장 김성욱 (031-259-0240) 담 당 이은진 (031-259-0241)

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, 지난해 10월 15일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“대표이사” 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

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(지청장 강금식, 이하 ‘경기지청’이라 함)은 “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○○○**식품제조업체**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하여 **110여 일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경영책임자**인 **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2월 10일** 검찰에 사건을 **송치**하였다.”라고 밝혔다.

앞서, 고용노동부는 **사망사고 발생 직후** 경기·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**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**하여 경영책임자의 **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**에 대한 **수사를 신속히 진행**하였다.

그간, **고용노동부 경지지청**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○○○식품제조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**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**에 대해 **압수수색**을 **진행**한 결과,

이 사건 사망사고가 **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**으로 해당 공정에 **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**에서 발생하였음을 밝혀 **사건을 "기소의견"으로 송치**하게 된 것이다.

강금식 경지지청장은 "앞으로도 경기지청은 **중대재해 예방**을 위해 **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·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**하는 한편,

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**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**하여 엄중한 **처벌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